

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	 
		보도	'21.7.8.(목) 석간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 장 수(02-2100-2620)	담 당 자	장 지 원 사무관 (02-2100-2696)
	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 병 칠(02-3145-7120)		윤 동 진 팀장 (02-3145-7147)
	신정원 빅데이터센터장 심 현 섭(02-3705-5433)		성 시 호 팀장 (02-3705-5764)
	금보원 데이터혁신센터장 임 구 락(02-3495-9900)		유 재 필 팀장 (02-3495-9950)

제 목 :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(7.7.)를 개최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, 금융권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
 - ① **(API 의무화시기)** API 시스템 구축 후 충분한 사전 테스트기간 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착을 위한 API 의무화 유예 필요성
 - ② **(정보제공항목)** 소비자 편의와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(수취·송금인명, 이체메모) 등 금융 마이데이터 API 제공정보 확대 검토
 - ③ **(소비자보호)**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가입현황 안내 및 알고하는 동의 등 소비자 보호방안 논의
-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7월 중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

I 자문회의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전문가·관계부처 및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, '21.7.7.(수) 10시에 “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”를 개최하여
 - 그간의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실무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API 의무화 시기 유예, 전송대상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[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]

- 일 시 : '21.7.7.(수) 10:00~11:30
- 참석자 : (자문단) 소비자 전문가(문정숙 前금융소비자연맹 회장, 최미수 한국금융 소비자학회 회장,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박사),
학계(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, 정영돈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),
법조계(고환경 광장 변호사, 고광선 김앤장 핀테크·IT 전문위원)
- (관계부처) 금융위원회(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
개인정보보호위원회, 4차산업혁명위원회, 국무조정실
- (유관기관) 금융감독원, 신용정보원, 금융보안원, 은행연합회, 생·손보험회,
여신전문금융협회, 금융투자협회, 핀테크산업협회

II 주요 논의내용

1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한 유예

- (현황) '21.8.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*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나,

*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ID/PW,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은행 등 정보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하여 전체 고객정보를 일괄조회

-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,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 요청
-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 필요
- (검토방향)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하여 API 의무화 기한 (現 '21.8.4.) 유예 검토
 -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 등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테스트 실시
 -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*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

* 예) 차등유예시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API를 시행할 때마다 앱 업데이트 절차 소요 등

2 정보제공항목 관련

가. 적요정보 (수취·송금인 성명·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) 제공방안

- (현황)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對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*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,
 - *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·송금인 계좌·성명·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로서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는 경우 수취·송금인 실명이 기록
-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하여 해당 우려가 해소되어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
- (검토방향)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하여,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
 - 적요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,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
 - 또한, 거래 상대방이 특정·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미제공

나. 추가 API 제공항목

- (현황) '19년부터 데이터 표준API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금융권 데이터에 대한 표준 API를 구축하였으나,
 - 금융상품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정보, 가공정보* 등은 API 제공항목에서 제외
 - * (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대상 정보) 금융회사 등이 소비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소비자와의 권리·요구관계에서 생성된 신용정보로서 금융회사 등이 동 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
- (검토방향)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API 제공기준을 조속히 마련
 - 다만, 추가 API 개발기한은 정보제공자별 추가 개발부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

3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

가. 과도한 서비스 중복가입 제한

- (현황)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

※ 국내 금융소비자는 평균 6.84개 금융서비스 앱을 이용(롯데멤버스 설문, '21.4월)

- (검토방향)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
 -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
 -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나. 과도한 마케팅 제한

- (현황)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이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변질 우려
 - 특히, 과도한 출혈경쟁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,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불편 초래 가능성
- (검토방향)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 향상과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검토
 -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*을 참고하여 통상적인 수준(예: 3만원)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과도한 경품제한 기준 마련

* (은행) 3만원, (카드) 평균 연회비의 100분의 10, (보험) 연간 납입보험료의 10%와 3만원 중 적은 금액

다. 알고하는 동의양식 마련

- (현황)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서비스 가입 이전 정보제공 항목과 정보제공에 따른 편의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
- (검토방향)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,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 시스템을 구축
 -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동의사항* 및 별도 고지 필요 사항**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운영
 - * 전송요구 종료시점, 정기전송여부, 제공항목별 수집·이용동의 등
 - ** 민감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가맹점정보, 적요정보 및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절차 마련
 -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통합자산목록조회 이용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

III 향후계획

- 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고,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.
- '21.24일부터 시행중인 금융 마이데이터가 현재 스크래핑 방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API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·관리해나가겠습니다.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